

제32회 경기공직대상 응모요강

제1조(명칭) 본 상은 '경기공직대상'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관내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훌륭한 공직자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공직의 가치를 높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정직하고 성실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정의로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다.

제3조(시기) 본 상은 매년 6월 중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대상) 본 상의 수상 대상자는 아래의 공직자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1. 일반, 경찰, 소방, 교정, 세무행정 부문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지자체 등 해당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6급 이하의 공직자.
(단, 교정부문은 서울지방교정청 관할 교도소 및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 한다)
2. 사도(교육행정)대상 부문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10년 이상 교직에 근무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의 교사, 교감, 교장 및 교육행정직에 근무하는 교직원.
3.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산하 공공기관의 장.
4.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현직 기초, 광역의원.
5. 공고일 현재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의 현직 기초단체장.

제5조(자격) 본 상의 수상자는 본 요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업적 및 공적이 있어야 한다.

1. 일반행정, 경찰행정, 소방행정, 교정행정, 세무행정대상 부문
 - ① 올바른 국가관과 남다른 사명감으로 솔선수범하며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타 공직자에 귀감이 된 자.
 - ②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행정쇄신에 크게 기여한 자.
 - ③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자.
2. 사도대상 부문
 - ① 올바른 스승상 정립과 사도확립에 남다른 수범으로 타 교직자에 귀감이 된 자.
 - ② 교육환경개선에 남다른 연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교육발전에 이바지 한 자.
 - ③ 학생 생활지도 및 선도, 나눔교육 등에 기여한 공이 큰 자.
3. 공공경영대상 부문
 - ①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큰 공공기관장
 - ②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방문화창달,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업적이 큰 공공기관장
4. 자치의정대상 부문
 - ① 우수법률안 대표 발의 및 정책연구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의원.
 - ②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여야협치 등 성숙한 의회정치를 선도한 의원.
 - ③ 경기도민과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
5. 자치경영대상 부문
 - ① 지방분권시대 지방자치행정 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업적이 있는 단체장.
 - ② 지역경제활성화,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역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서비스, 지역개발 등 분야에서 우수정책개발 및 업적이 있는 단체장.

제6조(심사위원회) 본 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1. 심사위원은 7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학계, 언론계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덕망이 있는 인사를 선정하여 경기일보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3.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4. 심사위원은 당회의 시상으로 자동 해촉된다.

제7조(시상인원) 본 상의 시상 인원은 일반행정대상 3명, 경찰행정대상 3명, 소방행정대상 2명, 교정행정대상 1명, 세무행정대상 2명, 사도대상 4명, 공공경영대상, 자치의정대상, 자치경영대상으로 한다.

제8조(추천기관 및 추천권자)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 추천기관과 추천권자는 아래와 같다.

1. 일반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기초, 광역단체이며 단체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2. 경찰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인천경찰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3. 소방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인천소방재난본부이며 본부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4. 교정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서울지방교정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5. 세무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중부지방국세청과 인천지방국세청이며 청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6. 사도(교육행정)대상 부문의 추천기관은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이며 교육감이 추천권자가 된다.
7. 공공경영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8. 자치의정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9. 자치경영대상 부문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9조(후원 및 협찬) 본 대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원 및 협찬을 받을 수 있다.